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6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11. 12.(목)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김재홍 부위원장

제6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참석하셔서 과반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6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57차, 제58차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되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55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 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11월 19일에 있었던 제59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당초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만 <보고안건 나>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 제정안에 관한 사항”은 모든 상임위원님께서 참석하시는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상정을 보류하고 오늘은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5-60-26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9월 접수된 (주)KNN의 FM방송국에 대한 허가심사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로는 2014년 9월 25일에 KNN에서 신규 FM방송국 허가신청을 했고, '14년 10월 23일에 방통위는 미래부에 기술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15년 2월 27일에 미래부는 기술심사 결과를 '조건부 적합'으로 회신했습니다. 이때 회신하면서 EBS 방송보조국과의 전파혼신 예방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15년 8월과 9월에 걸쳐서 KBS와 EBS에서 혼신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15년 9월에 방통위는 미래부에 기술심사 재검토 요청을 했고, '15년 10월 26일 미래부는 방통위에 재검토 요청에 대해 최초 의견과 동일한 의견으로 회신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신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주)KNN이고 심사대상은 KNN FM방송국이고, 방

송구역은 부산광역시 일원입니다. 방송국 소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0번지 KNN타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심사위원회 구성(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기술적 능력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기술분야 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구성하고자 합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기준 및 배점은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 및 기존 FM 라디오 허가심사 배점을 참고하되, 미래부 기술심사에서 방송권역이 협소하다고 지적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FM 라디오 허가심사 배점 중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여 난시청 해소노력 등을 중점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여부 결정 기준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한 신청인에 대하여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를 의결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5년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청취자 의견청취를 하고 12월 중에 심사위원회 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부에서 기술심사 결과 2015년 2월 27일 '조건부 적합' 그다음에 재검토 요청에 대해서 2015년 10월에 '최초 의견과 동일' 이렇게 왔는데, '조건부 적합'에서의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제가 그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설치 후 시험전파 발사기간 동안 혼신여부를 측정하여 혼신발생 시 차폐시설 추가 설치 등 기술적 조정을 통해 혼신을 해소하는 조건' 이렇게 미래부 공문에 담겨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실제로 안테나를 설치해서 방송을 시작했을 때 혼신이 발생하면 또 별도의 차폐시설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하나 또 확인할 것은 허가여부 결정 기준과 관련해서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신청서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 이행 외에는 다른 조건은 부과를 못 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650점 이상이라도 저희 정책 목표상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그 위의 표현은 650점 이상 획득한 신청인에 대하여 '허가', 650점 미만은 '불허', '조건부 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써 놓은 것으로 봐서 종합하면 마치 신청서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건 이외에는 조건 부과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읽힐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 고삼석 상임위원

-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경과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래부가 최초로 저희에게 결과를 조건부로 적합하다고 보내온 것이 금년 2월 27일이고, 저희가 사업자들 KBS나 EBS의 문제제기하는 공문을 접수해서 미래부에 다시 기술심사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 9월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재검토 회신을 했는데 최초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2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 저희가 답을 받기까지는 8개월 가까이 흘렀는데 결과는 동일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미래부가 추가적으로 기술 검증한 내용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 8월에 KBS, EBS가 이의제기한 것은 당시에는 허가접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8월경에 알아서 8월 말쯤 그 사실을 알고 저희에게 바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1, 2주 정도 있다 검토한 후에 미래부에 재검증을 요청했고, 미래부에서는 부산전파관리소를 중심으로 관련자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기술적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통보받지는 못했고, 그 결과만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도 KBS, EBS 쪽과 미래부 의견이 약간 상반된 의견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여쭙 보는 것은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기술검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기술적 검증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알기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당연히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2월 27일자 '조건부 적합' 의견 회신할 때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KBS나 EBS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을 포함해서 조건을 달리해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파악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KBS나 EBS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에게 한 것이고, 주파수와 관련된 혼선의 문제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당연히 미래부가 하지만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쪽에 통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 보는 것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을 직접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미래부의 기술심사를 반영하여 방통위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봐서 미래부의 기술심사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다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부의 기술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의 과정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는데 그 과정이나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렇게 하십시오. 처음에 미래부가 자체적으로 기술심사를 한 것과 지금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KBS, EBS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다시 기술심사를 했을 텐데 그 추가적인 기술심사에 관한 자료,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조건을 어떻게 달리해서 재검토했는지 그런 자료를 저희가 확보해서, 기술적 능력을 면밀히 살피려고 심사위원회 구성시 기술 전문가 두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위원들을 통해서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자료를 저희가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미래부와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다음에 커버리지가 안전에 나와 있습니까? <붙임>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안전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커버리지는 따로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커버리지는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면적과 가시청 가구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씩 나오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미래부의 기술심사 결과에는 면적률로는 34.35%, 가구 기준 커버리지 예상으로는 57.28%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조건으로서 여타의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커버리지입니까, 아니면 혼선 예방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 전제 하에서 예를 들어 차폐막을 설치한 전제 하에서의 커버리지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미래부에서 일단 차폐막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자연 상태에서 1kW로 했을 때 지금 이 정도의 커버리지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서 '조건부 적합'에 붙어 있는 조건입니다만 만약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차폐시설이나 안테나의 각도를 바꾸었을 경우에도 커버리지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바뀔 수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FM 허가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커버리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법령상에는 커버리지 기준은 없고, 다만 미래부에서 방송 기술 검사할 때 내부 지침으로 인구 기준이나 면적 기준 둘 중 하나가 50%를 넘는다면 내부적으로 기술심사를 적합으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시행령이나 강제적인 규범으로 법령상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부분들은 추후에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KNN 표준FM 허가신청 재원을 보면 105.7MHz 대역이고 1kW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인접해 있는 양산EBS FM이 출력은 더 낮고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쓴다는 것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인접한 데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허가를 내준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마 혼신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도 주파수 대역이 다른 것, 예를 들어 스�필오버(spill over)라든가 이에 따른 방송권역의 문제로 해서 논란이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바로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이 추후에도 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규 방송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불문율처럼 지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 사업자의 방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후발 사업자의 주파수가 스�필오버(spill over)되거나 혼선을 발생시키는 등 선발, 선점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바로 후발사업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기본계획까지 올렸고 사전에 또 몇 차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신규 라디오방송국 허가를 진행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주파수가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파수가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어려운 주파수를 찾아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검증을 면밀히 하고, 그리고 KNN 허가조건을 검토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들은 다 후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보고서에 보면 미래부에서 '혼신예방 방안 마련 필요'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 아까 고 과장께서 실제 내용을 쭉 읽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래부가 원론적인 의견을 단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신 제거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기술적인 검토를 다각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이런 허가할 때 사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물리적으로 예방조치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조건부로 의견을 내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업자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기술전문가라고 했는데 막연히 기술전문가라기보다는 이 이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그런 전문가를 모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미래부는 기술 심사를 하는 입장이고 결국에는 방통위가 지상파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볼 때 몇 가지 가치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이 방통위 내에서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꼭 일률적이고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술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데, 초기에 예를 들면 주파수에 대해 방송사든 통신사든 수요가 적었을 때인 방송시장의 초기단계와 지금 단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초기 단계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계 각국 어디든 주파수 자원이라는 것이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고, 또 시장의 수요 입장에서 봐서는 소위 말해서 매체의 다양성 내지는 시청자, 국민들의 선택폭을 넓혀 주고, 또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제공하고, 예를 들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기술적으로 주파수 사정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가해 주어야 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을 얼마나 엄격하게 볼 것이냐? 아까 고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는 것이 0이어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심사위원들께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방통위에서 결정을 할 텐데 저는 여러 측면을..., 항상 저희가 일관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파수 자원의 사정상 조금 유연하게 볼 측면 2가지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어느 위원님이 심사위원장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심사일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12월 말인데 언제 며칠 동안 하는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방에 가서 며칠 동안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위원장님이 결정되시면 그때 가서 상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고삼석 위원님!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기주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되, 제가 지적했

던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주파수 자원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또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연하게 정책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권역을 넘어가는 스페일오버(spill over),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발사업자나 그 지역에 접하고 있는 사업자가 왜 우리 지역에 타 지역의 방송이 들어오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면 주파수 대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둘 다 안 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일오버(spill over)가 많이 된다면 양산EBS FM도 안 들리고, 그다음에 부산KNN 표준FM도 안 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 그것을 갈라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EBS FM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수능방송용 주파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우리가 간략히 KBS나 EBS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그 요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KBS와 EBS가 제출한 의견서 요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부가 말하는 차폐시설은 직진 방향의 전파 감쇠효과가 일부 있으나 회절파와 반사파 차단효과는 크지 않다. 회절성, 반사성이 뛰어난 FM 주파수의 특성상 전파차단 시설만으로 양산과 같은 넓은 지역의 혼신해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고,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부가 충분한 기술검증을 통해서 문제제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실 분들이 분명히 이쪽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들의 우려,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기술심사를 강화하면서 기술분야 심사위원을 1인에서 2인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를 했고, 위원들 선정할 때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기술 쪽 배점도 예전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과 고삼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술 분야 전문가는 미래부의 기술심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분으로 선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파수가 105.7MHz로 동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로 안테나를 준공해서 방송을 했을 경우에 양산지역 EBS의 방송에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도 이 심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조건 같은 것들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건을 면밀히 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국을 세워서 그것을 방지한다고 하면 또 보조국을 세우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방송을 개시 못 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존 방송이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가지고, 전파 장애가 해소된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전 국장님이 조건 이야기를 하셔서 저에게 얼핏 들리기에는 아직 심사를 안 했는데 조건부 허가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고 조건 없이 해 줄 수도 있고 조건부로 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심사 이후에 잘 검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주셨습시다만 기본적으로 안건에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최초 허가 신청할 때 2페이지를 보시면 신청인이 KNN이고, 대표자가 김석환 대표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표이사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회사를 대표해서 어떤 분이 대표일 때 신청이 들어왔고, 승인이나 불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여전히 서류상으로 이분이 대표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 변경에 따라 서류 보정이 필요한지 검토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최초 신청서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신청서류를 신청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나중에 허가 심사하실 때는 대표자가 현재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KNN에게 우선 서류를 보정하도록 그렇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심사 이전에 당연히 보정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 결되었습니다.

나.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5-60-26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 헌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 헌 방송광고정책과장

-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을 방송광고 위반행위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과 과태료 결정방법 등 과태료 부과절차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010년 10월에 방통위가 방송광고 과태료 부과권한을 중관소에 위임하였고, '14년 8월에 저희가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 11월에 다시 중관소의 방송광고 과태료 부과권한을 회수하였고, 올 2월에 「방송광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지침 제목 및 적용범위 규정으로 지침의 적용범위를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 내용은 지침 제목을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에서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으로 변경하고, 적용 범위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방송법 제74조 및 제108조제1항제11호에서 방송법 제73조, 제74조 및 제10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견제출시 업무처리 방식 규정입니다. 의견제출 통지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 의견제출 여부에 따른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유형에 따른 업무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경을 하고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결됩니다. 두 번째로 의견제출이 없고 자진납부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납부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의견제출 시에는 위원회에서 다시 과태료를 의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입니다.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위반행위에 대한 동일 위반행위 종류와 위반횟수 및 정도에 따른 가중·감경 및 가산 기준 규정으로 지침의 일률적 적용을 위해 과태료 부과시 조정금액의 고려사항을 동기, 내용, 정도, 당사자의 태도 등에서 위반내용과 정도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현행 협찬고지 위반행위의 종류 구분기준에 방송광고 위반행위의 종류 구분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행령에 있는 방송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명시하고, 일일 광고총량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가중사유를 엄격히 하였습니다. <별표 2>입니다.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역시 저희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시 고려사항을 위반횟수와 정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참고로 협찬고지 관련 부과 고려사항에는 가중·감경시 지침으로 일률적 적용이 곤란하고 위원회 판단이 필요한 위반행위 동기나 당사자의 태도, 재산상황 등은 삭제해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있는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직전 과태료의 1/2을 가산하는 규정이 협찬고지 위반행위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고,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가산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구정리로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목에 맞춰 용어를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에 따른 의미를 명확히 표기하고, 관련 근거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시행일 및 경과규정으로 시행일은 방통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그리고 경과규정은 이 지침 개정 이전에 발생한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을 부칙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이 개정되면 올해 2월에 했던 방송광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은 폐지를 하는 것입니까?

○ 이 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때는 저희가 별도 지침으로 만들지 않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는 없습니까? 방송광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은 이것이 의결되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또는 효력을 잃는 것으로,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 이 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2개가 병존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칙에 그것을 명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부칙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에 종전의 방송광고 과태료 부과기준 효력 상실 내용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기로 하고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고시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간 2008년 10월 29일에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부 지침에 따라 인가 업무를 해 왔습니다만 위치정보법이 지난 8월 4일에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고시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인가신청서류로서 신청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별표 1>에 있는 인가신청서류 작성 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인가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해서 심사의 일정과 절차, 그다음에 심사위원 선정 등에 관한 인가심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2>에 있는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과 <별표 3>에 있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을 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계량 평가는 항목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각 심사사항별로는 60점 이상, 총점으로는 70점 이상인 경우에 인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위원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고시는 종전의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인가 기준 및 절차 관련 내부 지침’이라는 명칭으로 의결 형태에 따라 해 왔던 것을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행령에 따라 정식으로 고시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서 내용도 일부 가다듬어서 한 부분이고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보고 싶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라 한 번 여쭙 보고 싶습니다. 기자간담회에 보도된 오늘 아침 기사들을 보니까 저희가 공모 진행 중인 EBS 사장 내정설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정설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도 않다. 그리고 EBS는 교육방송으로 공교육을 보충해 사교육을 줄이고 성인 대상 사회 교육 역할을 충실히 할 사람이어야 한다. 이번 공모에 좋은 사람이 많이 응모해서 선정과정에서 어떤 분이 더 좋을지 고민하는 상황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이십니까? 정확하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위원장님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요.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진심을 이야기하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왜 내정설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했지만 내정설이 나오는 이유가 있고 그런 빌미를 제공한 측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는 않겠습

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을 공개하거나 그다음에 관련 내용을 놓고 진실공방을 하는 불편한 상황이 없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2항을 보면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한 규정대로 절차대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EBS의 설립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는 그런 책임자가 선출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또한 위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향후 EBS를 이끌어갈 좋은 사장이 선출되도록 하는데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취지에도 공감하십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감사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EBS 사장을 방통위 위원장님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충분히 협의를 거쳐'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법에 규정된 자구와 고 위원님이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협의 안 하시고 동의만 얻고 하시려고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 그대로...

○ 고삼석 상임위원

- 동의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나중에 그 상황이 되어서 할 일이긴 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고 위원님이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법 조문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당연히 논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서서는 충분히 협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충분히'라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당연히 동의를 얻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6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2분 폐회 】